

예산총칙

2024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700,180,636	21,005,419
일반회계	606,833,077	18,204,992
특별회계	93,347,559	2,800,427
공기업특별회계	68,998,581	2,069,957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9,166,995	875,010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39,831,586	1,194,948
기타특별회계	24,348,978	730,469
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특별회계	9,178,450	275,354
의료급여특별회계	254,524	7,636
주차장운영특별회계	670,042	20,101
대지등보상특별회계	5,103,000	153,090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6,586,038	197,581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발전사업특별회계	529,942	15,898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39,460	1,184
기업유치세수농업환경특별회계	1,987,522	59,626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없음"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사"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없음"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081,678천원(일반예비비 2,081,678천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000,0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한도액은 40,4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건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경비, 동일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 경비 등은 상호 이용할 수 있다.